

제적생

자퇴 등의 자진 자발적 사유 또는 학사경고 기준 초과로 강제 적용되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더 이상 [재적생](#) 신분인 아닌 경우 제적생이 된다. 제적된 이후에는 [재입학](#)할 수 있다.